

20대 | 국회에 제안하는
문화정책 제안서

2016. 03.
문화연대

차 례

[머릿말]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법제도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3
--	----

[종합과제]

01	문화 전문성과 민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07
02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 분권을 위한 문화예술 재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08
03	실효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막아야 합니다	09
04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예술인복지 정상화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10
05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12
06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상화 및 예술 강사의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13
07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문화시설의 난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15
08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9
09	문화권리의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20
10	문화콘텐츠 독점 및 유통 불공정 행위를 막고, 문화 다양성과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1

차 례

[지역과제]

01	지역 내 유휴공간(공개공지 포함)의 문화적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 자산화해야 합니다	25
0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문화환경 최소기준 설정 및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27
03	지역에 문화예술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00개의 지역 문화예술 일자리 프로젝트)	29
04	지역 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 환경 조성 이 필요합니다	31
05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소를 위한 문화 공존 정책이 필요합니다	33
06	생태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내 공간 재생 및 활성화 정책 이 필요합니다	35
07	콘텐츠 중심의 역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38
08	지역별로 자율적인 시민자치문화와 생활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39
09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41
10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42

제20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법제도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수많은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보겠다며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공천 잡음”만이 가득할 뿐 “정책 선거”의 가능성은 어둡기만 합니다. 정치적 세력, 경제적 이권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화정책,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흐릿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대는 또 하나의 정책 자료집을 세상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 대다수의 정치인이 이 자료집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상상력으로 가득 찬 문화정책들을 계속 세상에 내놓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문화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적었던 시절에도, 문화연대는 늘 낯설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세상에 제안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했던 ‘문화기본법’, ‘지역 문화진흥법’,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문화연대가 현장의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상상하며 제안했던 그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확대해 왔습니다.

문화연대의 이번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20대 문화정책 제안서>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의 정책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제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돼야 할 문화정책 제도 개선 과제들을 10개 제안합니다. ‘문화정책 체계 수립을 위한 국회 운영제도 개선’, ‘문화예술 재원 안정화’, ‘무분별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 방지’,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및 예술인 복지 정비’,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운영 혁신’, ‘문화예술교육 제도 정상화’, ‘국립문화시설의 난건립 방지’,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개선', '문화영향평가제도 전면 도입', '문화콘텐츠 독점 및 유통 불공정 행위 개혁' 등을 위한 제도 개혁 방향과 대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지역 의회, 지역 행정기관들, 시민사회 및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야 할 10개의 지역 문화 과제를 제안합니다. '지역 내 유희공간의 공공 자산화', '지역 문화환경 최소기준 설정 제도화', '지역 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일자리 만들기', '지역 문화 격차 해소',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생태 문화적인 공간 활성화', '지역 문화유산 정책 수립', '자율적인 시민자치문화와 생활예술 생태계 형성',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과 사회적 경제 연계',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번 정책 제안 작성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연대는 이번 정책 제안들의 제도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제안서를 계기로 제20대 국회 동안 조금 더 문화의 사회적 가치가 확대되고, 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받는 법제도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과제

종합 과제 01. 문화 전문성과 민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이명박 정부 이후 주무부처(문화부) 등 행정을 통한 문화정책의 정상적 민간 거버넌스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친소 관계에 의한 부분적 협의만이 존재하고 있음
- 문화 관련 국회 상임위 역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9대 국회 상반기까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국회 중반 이후)를 거치며 방송, 교육 등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우위에 있거나 여야 간의 정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중점적으로 다루지면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화정책이 깊이 있게 다루지지 못하고 있음
- 문화정책 사업은 타 분야에 비해 예산의 사이즈가 작고, 사업의 가짓수는 많은 특징이 있음. 그래서 소관 기관도 다양하고 상임위에서의 다루야 할 이슈들이 많다는 점에서 실적으로 가시화시키기가 쉽지 않으며, 이에 반해 정책 이해를 위한 전문성은 많이 요구됨

(2) 정책 방향

-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조의 개편이 필요함. 현재의 구조에서는 교육부 소관에 업무에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상대적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 없음. 그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의 특성상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사고가 필요로 하는 문화분야와 같은 상임위에서 다루지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문화 분야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정보의 개방성 강화와 민간 의견의 수렴
- 문화 관련 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풀의 확보와 활용

(3) 정책 내용

- 상임위 개편을 통한 위상 강화 : 문화 체육관광 상임위의 독립적 구성
- 연 2회 상임위 주최/주관의 문화부 주요 예산 공개설명회 개최
(상반기 : 예산 사업 시작 시점, 하반기 : 예산 편성 시작 시점)
- 20대 국회 의원 연구모임으로 문화정책전문연구모임 구성
- 부처 간 칸막이 정책의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각 정당 정책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각 정당의 문화 분야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함)

종합 과제 02.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 분권을 위한 문화예술 재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2016년 중앙정부 문화재정 총예산은 6조 6,390억으로 전년 대비 8.5% 증액되는 등, 문화재정 총량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주로 체육, 관광 부문이 이러한 양적 팽창을 주도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문화예술 분야 기간 재원인 문예 진흥기금 적립금 규모는 2004년 5,273억에서 2014년 1,547억으로 급감하여 고갈 위기에 직면해있음. 그 결과, 취약계층 문화 향유권 보호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재원의 많은 부분이 복권기금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문제적 상황을 낳고 있음 (* 2015년도 문화예술분야 : 복권기금 426억 원, 지방비 232억 원 매칭)
- 문화예술 분야 재정사업 중 국비-지방비 매칭형 사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역 문화의 내용적 자율성은 위축되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은 심화되고 있음
- 총량적으로 문화재정의 양적 팽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문화예술 재정의 급격한 위축과 지역 문화재정의 (중앙정부 문화재정) 종속화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음

(2) 정책 방향

- 문화재정의 부문 간 균등성 회복 : 문화산업·체육·관광·문화예술 각 분야 간 문화재정 균등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문화재정 정책 수립
- 기초예술 중심의 문화예술 재정 안정화를 위한 문예 진흥기금 대체재원 확보
- 실질적 문화 분권 실현을 위한 중앙 문화재정-지역 문화재정간 협력 체계 구축 및 자주적 지역 문화재원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3) 정책 내용

- 문예 진흥기금 적립금 고갈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를 활용한 문예 진흥기금 대체재원 조성
 - 정부 기금 간(예를 들어, 방송발전기금) 전출입 제도를 활용한 문예 진흥기금 적립금 확충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해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예 진흥기금 적립금 조성 방안 모색
- 국비-지방비 매칭형 문화재정 운용 및 문화예술 사업 추진방식 개선
 - 사업별 국비-지방비 매칭형 사업 추진방식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포괄적 문화재정 협력방식으로 전환
- 자주적 지역 문화재원 조성
 - 지역 문화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신규 세원 발굴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교육세를 지방교육문화세로 전환하거나 신규 세원을 기반으로 지방문화세 신설

(4) 기타

이동연, <문화예술 지원체제의 변화와 문화재정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시도문화재단 대표자회의 문화정책 토론회_문예 진흥기금 고갈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편성, 어떻게 할 것인가?」, 2015.

종합 과제 03. 실효성 있는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를 통해 무분별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막아야 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메가 스포츠이벤트 및 국제 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의 파탄, 환경파괴, 대회 유치를 명목으로 한 규제 완화와 막개발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
- 여전히 ‘국위선양’,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맹목적 국가주의 담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치적을 쌓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이와 결탁한 토건자본의 여론몰이에 메가 스포츠이벤트 및 국제행사의 유치 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
-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사나 심사가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존재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형식화되어 있음.

(2) 정책 방향

- 메가 스포츠이벤트 및 국제 행사 유치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화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필요
- 메가 스포츠이벤트 및 국제 행사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에 따른 문제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 적용 필요
- 대회 이후 시설들의 사후활용에 대한 현실 가능한 대안 마련 의무화

(3) 정책 내용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방향〉
 -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운영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구축 조항 추가
 - 유치 과정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 조항 강화
 - 지방재정 부담에 따른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정 추가
 - 유치과정에서 국제대회의 사전타당성 분석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 대회시설의 사후활용 적절성을 포함하는 사후 평가 방식
 - 대회 유치 및 진행 주체들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페널티 조항 추가
-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심사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유치심사 시민배심원 제도 도입
- 메가 스포츠 이벤트 관련 특별법의 남발을 막기 위한 발의 요건 강화

(4) 기타

녹색연합/문화연대/체육시민연대,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의 유치와 운영의 문제〉, 2016.1.

종합 과제 04.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예술인복지 정상화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한국에서의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과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편입이란 방향에서 제기되었으며, 예술인복지법 제정 과정에서 이는 예술인에 노동 의제 적용 이란 관점에서 논의되었음
-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반발과 다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노동 의제 대부분이 사라져 버리고 예술인복지법은 사실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한 내용만 담은 채 제정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출범 이후 학습공동체지원, 예술인 긴급복지지원(현행 창작준비금지원), 산재보험 지원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시도하고 있으나 단기적인 지원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음
- 이에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제도 확대라는 관점에서 예술인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

(2) 정책 방향

- 지원정책 중심의 현행 예술인복지 정책을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확대로 전환
-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안정적인 예술인복지 자원 확보를 독립적인 재정 확보
- 예술인복지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3) 정책 내용

- 예술인에 대한 근로의제를 담은 예술인복지법 개정 :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예술인에 대한 근로의제 적용이 필요

현 행	개 정 안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생략) <신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인은 직업적·사회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등 결사체를 조직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의2(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보수를 목적으로 예술 활동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준하여 보호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술인의 근로환경 보장과 고용보험 가입 및 보수채권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2012년 예술인소셜유니온이 최민희 의원실과 함께 발의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중 근로의제 관련내용

■ 공연/방송/미디어 분야 종사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제도 수립(한국형 잉뜨레미땅 제도)

잉뜨레미땅(Intermittents du spectacle)

-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예술가 실업보험 제도로 프랑스 공연/영상 분야 예술가와 기술인력 중 2/3~3/4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자유계약직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전업 예술가들도 대상이 됨
- 잉뜨레미땅은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연금 및 건강보험의 형태로 전달 잉뜨레미땅의 운영재원은 노사 양자간 분담원칙에 따름
- 정부, 공연/영상예술 분야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간 협상을 통해 수급조건, 급여액 결정

- 현행 자격인증 방식의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경력관리 중심으로 개선하고,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 정보를 경력관리 시스템에 기록
- 안정적인 예술인복지 정책 운영을 위해 문화기업의 출현을 통한 독립적인 예술인복지기금 조성
- 동단위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를 통해 생활위기 예술인에 대한 예술인긴급지원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화

(4) 기타

- 문화연대/배재정의원실/예술인소셜유니온,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4. 4.
- 문화연대/배재정의원실/예술인소셜유니온, <공연예술인의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4. 7.
- 하강호, <한국사회의 변화와 예술노동의 풍경>, 2015 맑스꼬뮤날레
- 김상철, <예술인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과학 2015년 겨울호

종합 과제 05. 예술의 사회적 권리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헌법 제22조는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1조는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검열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
- 2015년 8월과 9월에 걸쳐 벌어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압력 행사와 국립국악원 <금요 공감> 프로그램 무단 변경 등 사례 등 검열행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킨 공공기관에 대해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전혀 없음

(2) 정책 방향

- 예술 활동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정치 검열 행위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예술 활동 자유 침해에 대한 조사, 감사, 조정 제도 도입
- 예술 활동 자유 침해 행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의무화

(3) 정책 내용

- 예술 관련 지원기관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가칭)예술인감사 옴부즈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련 예술인 100인 이상의 연서명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문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제도화함 (관련 법률 개정)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2016년 1월 29일 자 323개 공공기관 지정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문화원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정원 기준 미달 (15인/20인)로 지정 해제됨)
-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었을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내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드시 반영토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제20조(위원회)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 등 개정)

(4) 기타

-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사례

종합 과제 06.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정상화 및 예술 강사의 노동환경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문화제도 내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을 달성한 영역 :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가 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연간 지출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에 도달
- 지난 10년 동안 문화예술교육 정책 도입과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정책 목표와 주요 전략의 변화 필요 : 일자리 창출 중심의 양적 팽창에서 문화와 교육의 가치가 확장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중앙 집권적인 문화예술정책 기본 시스템 확립 도입 초기의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문화예술교육생태계의 시각에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접근 필요 : 중앙 정부와 기관 중심의 공급 및 전달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과 현장과의 협력 체계 수립 필요
- 학교 예술 강사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권 침해 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노동환경 보장 필요

(2) 정책 방향

-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취지, 최상위 목표를 다시 복원 혹은 재설정 : 일자리 정책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본래 목표와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좌표를 새롭게 설정
- 문화예술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협력체계 형성 및 '문화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권한 및 역할 재구성 필요
-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둘러싼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함
- 형식화된 학교문화예술교육 개혁 : 학교 및 교육행정과의 연계성 확보 및 실질적인 작동 구조 확보, 예술 강사 노동환경 정상화

(3) 정책 내용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및 독립 기구화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개정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적 운영주체인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기존 '중앙정부 지정 및 기간제 운영' 방식에서 '지방정부 설립 및 중앙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

현 행	변 경
<p>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중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 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 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중략).....</p>	<p>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중략)....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 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중략).....</p>

- **분권, 통섭,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형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정책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목표와 방향제시, 정책평가 및 조정, 지역 간 문화예술교육 교류와 협력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비하되,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진흥원 직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구조를 구축 ((가칭)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신설,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부서 신설 등)
- **지역 문화예술교육 재정 운영방식 혁신** : 현재와 같은 단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재정교부 방식을 포괄적 문화예술교육 재정교부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 사업·예산 기획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생활권역)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별도로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 내 공공·민간영역 문화 예술교육 주체들 상호 간 실행력 있는 정책협의 채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
- **예술 강사 노동환경 개선 및 지역 내 정규직화(노동 안정화) 추진** : 문화예술교육 예술 강사의 노동권 및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예술 강사 고용 책임 및 권한의 구체화, 예술 강사 활동의 지역화 및 안정화를 위한 권한 이양, 예술 강사 역량 강화 중심으로 평가제도 혁신, 예술 강사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등 필요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 콘텐츠 등을 위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활성화**

(4) 기타

-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 자료 참조
 - 문화연대/박혜자의원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술 강사 제도 개선 방안>, 2015.
 - 이원재, <지역문화예술교육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화연대·경기/서울/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국회의원배재정·국회의원유은혜, 2014.

종합 과제 07.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문화시설의 난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가 마련돼야 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박물관의 법적 구분은 ‘문화시설’(문화예술 진흥법 및 동 시행령)이며, 정책적으로는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과 함께 ‘문화기반시설’에 포함됨(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기반시설총람’을 발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 확대는 문화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으며, 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 최근에는 국립박물관의 건립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립박물관은 전적으로 국고 투입에 의해 건립, 운영될 뿐 아니라, 그 인적·물적 자산 및 관람객 규모에서도 공·사립을 압도하므로, 적은 개체 수(박물관 수)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현재 문화기반시설총람에 따른 국립박물관 개체 수는 국립대학박물관 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건립 계획단계 또는 건립사업이 진행 중인 박물관 역시 포함되어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개체 수는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표〉 박물관 운영주체별 전체 현황 (명, 점, 명)

운영주체	박물관수	전체			
		직원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수	연관람인원
국립박물관	39	1,785	309	1,720,009	19,843,526
공립박물관	332	2,778	479	1,898,872	40,164,082
사립박물관	336	2,609	615	6,437,928	37,948,310
대학박물관	102	648	212	1,670,032	1,333,721
총계	809	7,820	1,615	11,726,841	99,289,639

〈표〉 박물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 (명, 점, 명)

운영주체	박물관수	1관당 평균			
		직원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수	연관람인원
국립박물관	39	45.77	7.92	44,103	508,808
공립박물관	332	8.37	1.44	5,719	120,976
사립박물관	336	7.76	1.83	19,161	112,941
대학박물관	102	6.35	2.08	16,373	13,076
총계	809	9.67	2.00	14,495	122,731

*자료원: 2015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최근 국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주체, 건립 취지(동기) 및 경위 다변화(대통령 공약사항, 각 정부부처의 박물관 건립 붐, 지방정부/국회의원들의 국립박물관 지역유치 경쟁 및 공립박물관의 국립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등)는 향후에도 국립박물관의 지속적 증가를 예견케 함. 이는 곧 국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예산 규모의 증대와 직결됨. 그러나 국립박물관 건립·운영 주체, 건립취지 및 경위의 다변화는 국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예산이 ‘문

화예산' 외에서 집행되는 규모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국가 박물관정책의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 그에 관한 책임 소재를 취약하게 할 것으로 우려됨

〈표〉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국립박물관 사례(언론보도 취합)

사업주체	건립 추진 박물관	추진 현황
국토교통부	국립철도박물관	-사전 타당성조사 및 후보지 선정 용역 진행중 -16개 도시 신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인천 송도국제도시 950억 원(국비) 추진 -2016년 15억 예산 편성,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결과 없음을 근거로 전액 삭감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대통령 선거 당시 울산지역 공약사항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 계획변경 용역 진행중 -4,393억원, 울산대공원 일대 23만 여 ㎡ 부지 -이채익(새누리당 울산남구갑) 의원 의정활동보고
행복도시건설청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국립디자인박물관(문체부), 국가기록박물관(안행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국토교통부), 국립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문화재청), 국립어린이박물관(행복청) 등 5개관(4,552억원, 7만5천㎡ 부지) -2단계: 국립자연사박물관(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체육박물관	-문체부 2016년도 예산에 신규예산 20억원 반영 -이애리사(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2018년 개관 목표, 올림픽공원 내 건립 예정
여성가족부	국립여성사박물관	-〈양성평등기본법〉 상 여성사박물관 규정 신설 -2002, 국립여성사전시관 건립(고양지방합동청사)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	-김포공항 내 1만5천㎡ 부지, 430억원 설계공모(국비 934억원 투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국립화 건의(2015.4)

■ 현행법상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립 및 운영, 관리·감독 관련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여기에는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이 포함됨

■ 이 중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에 관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에서는 문체부 소속기관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책임운영 기관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10조), 문체부 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사전협의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둠(11조)

■ 그러나 문체부 소속기관 중 상기 3관을 제외한 국립박물관의 경우(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만 명기되어 있고 박미법상에 그

설립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문체부와 설립협의를 하되, 그 설립 근거는 박미법 외의 타 법에 따르므로, 국립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박미법의 실질적 효력은 취약함. 이는 국립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국가 박물관정책의 소관부처인 문체부의 정책적 위상과 행정권한, 책임범위 등이 제한적임을 의미함

■ 이는 곧 국가 박물관정책에서 국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 관련 종합적인 중장기계획 수립, 그 실행 및 관리감독 주체, 그 권한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제의 미비를 의미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국립박물관 등의 국립문화시설 건립의 의사결정을 임의적, 독단적, 불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사전에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정보공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없이 추진하는 방식을 방지할 법제적, 정책적 수단의 미흡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함

<p>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p> <p>제10조(설립과 운영)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p> <p>②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p> <p>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p>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p>⑥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은 "민속 박물관"으로 본다.</p> <p>⑦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p> <p>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p>②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2) 정책 방향

-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문화시설의 난건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 마련
- 국립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을 둘러싼 법제도 정비 및 개선.

-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건립 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협의, 국민 참여, 거버넌스 등의 절차 혁신

(3) 정책 내용

- 국립박물관의 신규 건립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국민 참여 제도화(해당 국립박물관 관련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국민에게도 충분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공론화 추진)
- 국립박물관 건립 관련 사전 의사결정과정 투명화 및 사전심의과정(협의제에서 심의제로 전환) 강화로 국립문화시설의 난건립과 그로 인한 국고 낭비의 방지
- 국립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 운영의 공정성, 자율성 확립을 위한 법제 정비: 국립문화시설 근거 법률의 제정 및 정비로 행정규칙 수준의 운영규정 체제 한계 극복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차원에서 제개정이 가능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 있는 국립문화시설의 건립 타당성, 공정성 및 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움)
-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국립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건립 중장기계획 수립, 실행 체계 및 거버넌스 수립,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 제개정, 법체계의 정비, 주관 행정기관의 법정 기구화 등
- 2016년 문화영향평가제 시행과 연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평가항목에 반영, 평가결과의 정보공시제 실시
- 문체부 자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약 5조 원 대)에서도 문화시설 건립 예산 비중이 여전히 높은 만큼(공립시설 건립 지원, 각종 센터 건립 등), 이에 관한 사전 건립심의 제도 및 문화영향평가 시행
- 국립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국립문화시설의 종합정보공시 시스템 구축, 신규 건립 시설의 계획 및 추진과정, 관련 연구용역 및 계획 자료,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 등 정보공개, 의견수렴 플랫폼 구축, 문화영향평가 결과 공개 포함

종합 과제 08. 문화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지역 문화시설에 대해 경영 없는 시설이라는 평가가 나온 지 오래되었는데, 이는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지역 문화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의 마련이나 시설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특히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조치로 인해 다양한 공공시설이 민간투자자에 의해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공공문화시설이 가지고 있는 접근권과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는 형편임 (수익자 부담에 따라 이용료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용자가 안정적인 기존 프로그램 중심으로 유사 중복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임)
- 여기에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문화시설의 기부채납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시설의 현대화는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각종 대규모 스포츠 메가 이벤트 이후 경기장 운영에서부터 최근 송도 국제도시개발사업자에게 인천시가 기부채납 받은 인천아트센터 연간 운영비 50억 원 사례가 있음)
- 이런 문화시설의 난개발로 인해 계량적인 문화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문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음

(2) 정책 방향

- 문화시설을 통한 지역 난개발은 건설과 운영 단계가 분리되는 현행법제도에 기인한 탓이 큼. 무엇보다 이를 추진하는 이들이 대개 임기가 정해져 있는 선출직 공직자인 점을 고려해볼 때 단기적인 시설 유치에 대한 경향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임
- 특히 여타 시설보다 문화시설이 지역사회에 가지고 있는 반발이 적은 점도 무리한 시설설치를 불러오는 배경이기도 함
- 기본적으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문화시설은 중요한 앵커시설의 기능을 하므로 문화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

(3) 정책 내용

- 분권 교부세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계획을 사전에 접수하고 사업예산을 배정하도록 <교부세법>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최소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전문인력의 고용과 필수 프로그램 비율 등을 제시하는 한편 문화시설 운영에 있어 개방형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문화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시설운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문화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지원함

종합 과제 09. 문화권리의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문화기본법 제정(2014. 03. 31)으로 동법 제5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 문화영향평가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문화적 권리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 문화영향평가는 문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 다양성과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해야 함
-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목적은 좁은 의미에서의 문화정책을 넘어 여러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문화적 가치와 관점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반영되는 것
- 하지만 현재 문화영향평가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문화권 보호 및 확장을 위한 제도로 작동하지 못한 채 형식화되고 있음

(2) 정책 방향

-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쟁점화된 문화의 "규제-진흥"의 대립적인 관점을 문화의 "권리-확산"의 관점으로 전환
- 문화부 주관 사업에서 벗어나 국정 운용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전체를 잠재적인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함
- 사업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에서 "사전-사후" 영향 평가를 병행
- 대규모 문화 관련 개발 사업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침해를 예방
- 중앙 정부 및 지역 정부의 주요 시정 사업에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중앙 정부 및 지역 정부의 주요 문화 시정 사업 중에서 사회적 확산이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

(3) 정책 내용

- 문화영향평가의 전면 실시를 위한 제도 개선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대상 사업 구체화 및 가이드라인 제시, 대상 사업 내에서 재원 확보 의무 제도화 등
-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전면 실시를 위한 제도 개선 :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영향평가 실행 계획 수립 유도 및 지원, 조례 개정 및 실행 기관 선정, 시범사업 진행 등

(4) 기타

- 문화영향평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 자료 참조
 - 문화사회연구소, 「서울시 문화영향평가 기초연구」, 서울연구원, 2015.
 - 문화사회연구소, 「2015년 문화영향평가 시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_ 세운상가 활성화 종합계획」,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종합 과제 10. 문화콘텐츠 독점 및 유통 불공정 행위를 막고, 문화 다양성과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문화콘텐츠산업의 규모(2015년 말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99.6조 원, 수출액은 57억 달러)가 계속 커지면서 생산-유통-소비의 순환 구조와 '제작자-배급자-창작자' 간의 경제적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 문화콘텐츠의 유통독점은 문화 자본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고 창작자들의 권리가 위축된다는 것을 입증
-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
-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행문화콘텐츠 산업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유통독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
- 문화콘텐츠 산업의 독점에 따른 시장 불균형의 주원인은 유통 불공정 행위
- 문화콘텐츠의 종 다양성 부족과 산업생태계의 근본적인 쏠림현상은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시스템(제작사, 투자자본, 플랫폼의 삼각동맹)이 문화콘텐츠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

(2) 정책 방향

- 문화 자본의 문화콘텐츠 산업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통한 시장 불균형 현상 완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이 보호될 수 있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정보(예를 들어, 매출 집계)의 투명화

(3) 정책 내용

- 극장 상영사배급제작사 변동 부율제 도입
-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 금지
- 특정 영화 최대 스크린 수 제한(총 스크린 수 제한 혹은 한 극장 스크린 수 제한)
- 복합관(7개 관 이상)의 경우, 1개 관을 다양성 영화 전용관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
- 음원 수익 유통비율의 조정 및 창작자 수익 비율 확대 조정
- 음원 사재기 근절을 위한 음원 다운로드 자료 공시 및 특정 시간 및 기간 트래픽 제한
- 음원 차트 집계방식 누적제도 전환
- 음악방송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기 모니터링과 해당 소속사 공개 명시, 장르별 다양성 인배를 위한 방송 쿼터제 실시
- 교보문고, 영풍문고, 에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대형 온-오프라인 베스트셀러 집계 방식 조정 및 폐지안
- 출판물 사재기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처벌 강화(출판사 등록 취소 포함)
- 게임 유통사와 개발사의 수익 분배구조와 비율에 대한 조정
- 게임 플랫폼 회사의 수익 분배비율의 과다에 따른 제작사 개발사 비율 상향 조정

- 문화콘텐츠 중 다양성 확보와 유통 불공정 행위 개선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 문화콘텐츠 유통 독점 규제를 위한 법제도 마련

(4) 기타

- 문화콘텐츠 독점과 유통 불공정 사례

<영화산업>

- 2015년 기준으로 개봉 극장에 상영된 한국영화 제작편 수는 232편, 외국영화는 944편 총 1,176편. 이 중에서 편수로 0.85%에 불과한 영화 관객 상위 10위까지 영화의 관람객 수는 8,283만 명으로 전체 관람객 수 2억 1,729만 명 중에서 38.12%를 차지. 상위 20편 (1.7%)으로 넓혀서 보면 무려 57.12%의 시장 점유율을 보임
- 극장수익과 배급-제작사 수익의 비율을 조정하는 영화 부율제의 불공정(6대 4)

<음악산업>

- 2010년-2013년 음반 발매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200여 장의 음반이 출시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아이돌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 그러나 방송출연비율은 순위 프로그램의 경우 80% 상회, 전체 음악프로그램(본격음악프로그램, 성인가요 프로그램포함) 중에서도 70% 상회
- 음원 유통의 문제에 있어 가격제도, 징수주체, 수익 배분에서 유통시장에 절대 유리하게 진행.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방송산업>

- 아이돌 그룹들의 지상파 음악방송(SBS 인기가요, 쇼음악중심, 뮤직뱅크) 프로그램 아이돌 그룹 출연 비율 80%를 상회

<출판산업>

- 동네 서점을 거의 폐점. 대형서점(교보, 영풍, 예스24, 알라딘 등) 중심의 판매
- 2013년 기준 7대 대형 서점 매출액 1조 6,772억(0.4% 성장), 영업이익 70억(56.5% 감소)

<게임산업>

- 게임개발자(사)와 유통사 간의 불공정 계약: 첫째, 독점적 권리의 제한 문제로, 이는 게임에 대한 독점적(혹은 비독점적) 퍼블리싱 권한을 주는 것과 관련. 둘째, 이익 분배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익 분배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대한 정의 및 범위 규정에 대한 것. 셋째,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이벤트 조건 문제. 넷째, 게임 업데이트가 퍼블리셔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

지역과제

지역 과제 01. 지역 내 유희공간(공개공지 포함)의 문화적 활용을 확대하고 공공 자산화해야 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유희공간 발생 증가
 - 농촌 : 인구 급감과 농업기술의 변화로 농어촌 공공시설의 용도 폐기가 많아지고 유희교실과 폐교가 증가
 - 도시 : 신시가지 개발이나 지역산업 쇠퇴 등 구도심 공동화 (빈집과 빈 점포 발생, 공공 또는 민간 건축물이 빈 채로 장기간 방치), 슬럼화 된 공간 범죄 장소로 악용될 확률이 높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공개공지(Privately Owned Public Spaces) : 건축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인지도와 활용도는 현저하게 낮은 실정
- 기존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정책사업의 한계
 - 기존 유희공간 문화예술 공간화 정책은 단기 임대 또는 위탁 계약 방식으로 운영 주체의 불안정성이 높고 장기적 비전 창출은 어려움
 - 공개공지의 경우, 공간운영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활용 콘텐츠는 부족하며 시민들의 활용도 또한 저조한 편
- 유희공간 현황 파악에서의 현실적 한계
 - '도시 유희공간은 지역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임과 동시에 재생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실제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주체에 공유되지 않음. (참고 문헌 : 임유경,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희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2) 정책 방향

- 지역 내 유희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와 공유
- 유희공간 문화예술 공간화 전략의 실행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 유희공간 문화예술 공간화 초기 설계와 실행에 있어 민간주체의 이니셔티브 인정
- 문화예술공간의 장기 임대 또는 장기 위탁 운영제 도입 및 적용
- 문화예술 공간화 정책을 위한 부처,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 마련

(3) 정책 내용

- 정책 대상지
 - 도시 : 공원, 놀이터, 미분양 아파트, 산업 시설의 작업장과 상점가 내 빈 점포, 공개 공지
 - 농촌 : 빈집, 폐교, 활용 미진한 문화 공간과 주민 공간
- 유희문화공간 활용과 운영을 위한 민간 주도 거버넌스 수립
 - 민간 주도 그룹이나 주민 리더 형성 및 발굴 과정에서 예술가가 참여하는 공동체 디자인 워크숍 선행 → 소규모 거버넌스 초기 시범 운영을 다양한 주체에서 시도 → 마스터플랜 수립
- 초기 개발과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문화 주체에 20년 이상의 장기 위탁

- 문화예술 공간화 정책을 위한 부처,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 마련
 - 부처 간, 부서 간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자체 내 빈자산(Vacant property)관리 통합 운영 TF 구성하며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권 부여
 - 지방자치단 업무평가에 유휴시설 활용도 반영
 - ※포괄보조금 :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설계·집행하게 하는 제도.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성을 강화함

(4) 기타

- 사례
 - 성북구 미아리고개예술극장(구아리랑아트홀, <https://www.facebook.com/theatreimiari/>) : 성북문화재단이 수탁하여 운영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2015년부터 20여 명의 기획자와 연출가가 운영하면서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공존하며 지역문화 생태계를 활성화
 - 커뮤니티 링크스(Community Link, <http://www.community-links.org/s/>), 로컬리즘 액트(Localism Act, 지역주권법) : 1977년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런던 동부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구의회와 협상하여 125년간 무상임대하고 기부와 모금을 통해 자산을 만들어 리모델링한 뒤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며 주민 참여 지역활성화 모델로서 자리매김
 - 코인스트리트(영국 coin street, <http://coinstreet.org/>) :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 사례. 주민대표 그룹과 사회적경제 주체, 개발회사는 물론 다양한 전문가와의원을 아우르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로 재생 사업을 시작. 이 기반은 토지 이용을 비영리로 제한하며 토지 매입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융자 하게 하는 등의 커뮤니티 토지 매입 및 개발을 지원하는 런던시 정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현재는 사회적기업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빌더스(CSCB)가 운영 중

지역 과제 0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문화환경 최소기준 설정 및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문화도시(마을)정책 부상
 - 문체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문화 진흥법 및 시행령 : 문화도시, 지역문화격차해소 등
 - 8개 부처 2개청에서 18개의 지역문화공동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식품부(5개) > 문체부.문화재청(4개).행자부(3개) > 국토부.환경부.해수부.고용부.기재부.산림청 (각 1개)
-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최소기준' 설정에 대한 움직임 미흡
 -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국민의 최저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근거 확보 노력
 -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2) 정책 방향

- 문화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최소기준' 설정
 - ※ 문화 격차 : 지역-지역, 지역 내(동-동, 마을-마을), 개인-개인
- 소득수준 향상 등 사회기준 선 향상에 따른 &적정기준&제시(최소기준→적정기준으로 이동)

(3) 정책 내용

- 문화활동 최저요건(비용, 공간, 프로그램, 사람 등) 계측 조사 연구→기준제시
- ※ 보건사회연구원(200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 교양 오락비

〈표〉 최저생계비의 생필품 항목

구 분	정 의
교양 오락비	최저 교양오락비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지난 최소한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 문화 활동에 필요한 최저비용 기준 설정 및 지원방안 강구
- ※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한도 상향 조정 등 기준근거 마련

(4) 기타

- 국내 사례
 - 국민의 정부(1998년) :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보고서 발간 / 최소.적정 기준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00년) 제정 : National Minimum의 법적·제도적 근거 확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3.6) : National Minimum 용어 사용, 하위 10% 기준 제시
 - 서울시(2012년) : 서울시민 복지 기준 설정 연구 및 기준선 제시 움직임

- 부천문화재단(2015년) <문화마을 최소기준과 거버넌스 모델 구축>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화마을 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음

<예시: 사람에 대한 최소기준>

생활문화시설 관련 사람 최소 기준			
분류	최소기준	세부기준	
생활 문화 시설	부천시 내 예술가와 주민들의 협업이 생활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예술가와 주민 간의 관계	생활문화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수평적 협력자
		(가칭) 네트워크 회의	지역 예술가 2인, 지방 문화원 1인, 생활문화지원센터 1인, 지역 주민 2인

부천시 공공도서관 사서 최소 기준				
분류	최소 기준	세부기준		비고
공공 도서관	사서 1인당 대상 인구 개선으로 부천시 내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사서수	소사구: 6명 → 15명 오정구: 2명 → 13명 원미구: 현행 유지	· 부천시 전체 사서 1인당 대상 인구를 현행 17,699명에서 12,486명으로 개선 · 공공도서관 공급 기준과 결합하여 진행

■ 국외사례

-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1952년) : 연금 급여 수준(40%→60%로 상승)
- 영국(NMS: National Minimum Standards) : 민간·자원봉사·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갖게 됨
- 일본(National Minimum과 Civil Minimum) : 주민생활의 최저기준 및 1960년대 소득 2만 불 시대 이후 대비 논의 등

지역 과제 03. 지역에 문화예술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1,000개의 지역 문화예술 일자리 프로젝트)

(1) 취지와 배경

- 예술 분야 전공자는 점점 늘어나지만, 관련 분야 일자리는 없어, 최고은, 김운하 등 생활고로 인한 예술인들의 고통은 높아지고 죽음은 잦아짐
- 예술가는 작품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하며,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치유하며, 부조리한 문제를 드러내고 해체시키면서 일상의 장소를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공동체로 바꿔냄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담당
- 소통이 단절되고, 공유할 문화가 사라지고 해체되어 가는 지역을, 관계가 살아나고 주인이 있는 마을로 바꿔내는 예술가 일자리와 예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
- 지역문화 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의 주체를 발굴하면서 생활문화예술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과 문화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지역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행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인구 20만 정도의 생활단위를 기준으로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와 전환도시에 대한 감각을 갖춘 문화예술 인력을 발굴하면서 지역 당 <1,000개의 지역 문화예술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의 추진 및 <예술 분야 공공 일자리 매니지먼트 공동체 회사>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이 자연과 함께 생동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환도시로서의 문화도시가 되어 가도록 함

(2) 정책 방향

- <1,000개의 지역 문화예술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민관협력 TF를 발족하고, 공공의 자본이 51%를 차지하는 <문화예술 분야 공공 일자리 매니지먼트 지역 공동체 회사>로 조직화
- 지역 내 문화예술 일자리 현황과 예술인 전수 조사 및 상시 등록 시스템 마련 :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는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직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가 단위의 표준화된 문화예술인DB는 지역커뮤니티와 생활세계의 특성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예술 일자리 현황과 정보를 제공 관리할 수가 없음
- 문화도시와 전환도시에 대한 주민 교육 시행과 문화예술 인력의 발굴
-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 공공일자리는 복지, 교육, 건축, 보건, 환경, 가로정비, 치안, 공원조성, 상가 활성화 등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 전 영역의 노동에 예술인이 직접 참여 관찰하면서 개발
- 지역 내 예술분야 일자리는 100개의 시범개발 운영 이후, 엄밀한 평가를 통해 자체로 지속성을 확보한 재정 선순환 일자리에 한 해 연차별 확대와 확산
- 공공재정은 초기 시범개발과 운영 단계에만 투입하고, 확산 확대되는 단계는 민간재정으로 자체 운영토록 함

(3) 정책 내용

- <1,000개의 지역 문화예술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문화예술 분야 공공 일자리 매니지먼트 지역 공동체 회사> 설립 운영
- 문화와 예술이 자연과 함께 생동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환도시로서의 문화도시 추진

(4) 기타

- 전환마을 만들기(영국 토트네스, 인구20만) : 전환마을이란 피크오일과 기후 파괴, 경제적 불안정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회복력을 갖춘 마을. 영국 토트네스에서 시작된 전환운동은 현재 40여 개국 1,100여 개 지역으로 확대
-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지역마다 특화된 문화를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 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제19조)할 수 있으며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진흥기금을 설치 가능(제22조)
- 근거 법률 : 예술인경력증명 및 파견근로(고용정책기본법, 예술인복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역 과제 04. 지역 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지역 문화진흥법 제9조에 나와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함
- 문화향유 기회나 문화향유 만족도는 일상적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활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 간의 문화 격차는 시급히 해소되어야 함.
- 특히, 문화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와 문화향유 만족도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나 군급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른바 ‘문화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표〉 도시규모별 문화시설 미입지 현황

구분	도시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원		영화관		과학관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특광역시	69	-	-	17	24.6	47	68.1	23	33.3	3	4.3	11	15.9	49	71.0
중대도시	25	-	-	2	8.0	7	36.0	4	16.0	0	0.0	0	0.0	14	56.0
중소도시	52	-	-	3	5.8	36	69.2	7	13.5	1	1.9	14	26.9	35	67.3
군급도시	84	-	-	13	15.5	57	67.9	18	21.4	1	1.2	77	91.7	65	77.4
계/평균	230	-	-	35	15.2	149	64.8	52	22.6	5	2.2	102	44.3	163	70.9

국토연구원(2015), 「국토정책 Brief」, No.503.

(2) 정책 방향

- 집행 기능을 갖춘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문화예술위원회를 필수 기구로 선정하여 설립을 의무화
- (문화시설 사각지대 해소)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빈도와 이동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시설 활용방안 및 전달체계시설을 확보해야 함
- 시설규모가 크고 이용빈도가 낮은 문화시설은 인접 지역 문화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즉, 지역을 가로지르는 문화시설로서 거듭나야 함
- 다양한 문화 관련 주체들(특히 지역의 청년층과 시니어층이 함께 할 수 있는)이 참여하여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지역 문화를 창출하고, 이를 도시재생 및 유희공간과 연계시켜야 함
- (문화시설 인증·평가제도 마련) 문화시설의 합리적 관리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인증 및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함

(3) 정책 내용

- 문화기반시설(공공 도서관, 작은영화관, 미디어센터, 거점 생활문화센터 등)을 필수 확보 시설로 선정 관리
- 이를 위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분석할 수 있는 틀(지표)을 마련해야 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서비스 기준) 등에

의한 문화권 취약 지역 해소

-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성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핵심과제로 관리
 - 문예 진흥기금의 '문화권' 재정 마련과 기초자치단체 문화권 예산 목표 관리제 시행
 - ※ &인구 1천 명당 문화권 예산 규모&를 지역 문화지표(지역 문화정책/대분류, &정책예산/중분류&의 세부지표)로 선정하고 평가
- 문화기획, 문화예술교육 등 분야의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축하고 인력 수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지원 활동이 수행되도록 조치
 - 적정규모 문화복지 패널 운영을 통한 지역 문화정책 내실화

(4) 기타

■ 사례

- 국토연구원(2015), 「국토정책 Brief」, No.503 중, 지역 간 문화 격차 분석의 틀

분석목적	분석관점	분석방법	분석 항목			
			문화시설	문화콘텐츠	향유 기반	향유 정도
지역 간 문화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문화향유 기회의 격차	통계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의 개수 •문화시설의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프로그램수 •연간 문화공연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시설 직원수 •연간 문화예산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관람객수 •문화시설당 관람객수 •프로그램당 관람객
	문화향유 만족도 격차	지역주민 면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호시설·방문횟수 •시설이용 만족도 •시설로의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호콘텐츠·활동빈도 •문화활동의 행태 •문화활동 제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동의 지역적 범위 •인접시설 이용도 •만족도 제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인식 및 체감도 •향유의지와 수요 •할애가능 시간·비용

지역 과제 05.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소를 위한 문화 공존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대학로, 상수동, 삼청동, 경리단길 등 서울의 지역뿐 아니라 대전 대흥동, 부산 중앙동, 광주 대인시장과 대구 방천시장 등 문화예술인들과 청년 수공업자들의 자발적 작업실 조성 및 지역 문화예술 활동으로 활성화된 거리와 상권이 오히려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예술인과 영세 상인을 내몰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특히 대도시의 원도심과 낙후 주거지 중심으로 국토부와 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업지와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그 현상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정한 '임대료 9% 인상 제한'과 '5년간의 영업권 보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이에 문화예술의 자발적 개입과 참여에 따른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관 주도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개발과 지역발전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생 활성화 지역 내 문화예술인 활동 거점공간과 지역 기반 자생적 수공업 가게의 경우에는 더욱 강도 높은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줌으로써 문화와 지역경제가 더불어 발전하도록 함

(2) 정책 방향

- 문화예술인과 지역 특색 수공업자로 인해 발전하는 지역을 '민간주도 재생지'와 '공공주도 재생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지원 및 보호정책과 제도를 마련
- '민간주도 재생지'의 경우에는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생 활성화 민간의 자산으로서 공공성과 대표성을 갖는 주체들로 구성된 공동체신탁회사, 지역개발시민기금 마련 및 지역개발협동조합 설립 지원
- '공공주도 재생지'의 경우에는 '재생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TF를 발족하고, 1년 이상의 토론과 교육을 실행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도출하고, 시행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민간의 주도성과 실행력이 갖춰진 후에 추진
- 지원 및 보호정책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특색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비와 상위법률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또는 지역 문화진흥법상의 '문화지구' 지정을 병행하고 재생 활성화 민간주체와의 공공협약을 통해서 문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지역을 재생 활성화해 감

(3) 정책 내용

- 지역개발 공동체 신탁회사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지역 재생활성화 공공협약 추진.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특색 보호 및 공존을 위한 법·제도 정비.

(4) 기타

- 사례
 - 나가하마 마치즈쿠리(쿠로카베 주식회사 www.kurokabe.co.jp, NPO법인 마치즈쿠리 야쿠바 <http://www.biwa.ne.jp/~machiya/>) : 1970년대 쿠로카베은행(クロカベ銀行)의 보존운동에서 시작된 일본 나가하마 시의 상점활성화 마치즈쿠리사업. 주식회사나 제3 섹터인 쿠로카베 주식회사, NPO법인 마치즈쿠리 야쿠바(まちづくり役場) 등의 민간주체

가 기관 등과 협력하며 지역의 활성화를 견인. 마치즈쿠리 야쿠바는 1998년 설립되어 2003년 특정비영리 활동법인으로 전환. 사업 초기 빈 점포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던 상점가가 2014년 현재는 대부분 점포들이 입주하여 공실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제3 섹터 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수익창출을 하는 모델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건물주와 임대인이 상생을 약속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유지 (참고자료 : 서울연구원 해외출장 노트 기록)

- 파리시, 2006년 소매업과 수공업 보호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인 파리도시계획(Plan Local d'urbanisme)을 수립하면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특정 가로를 '보호 상업가'로 지정. (참고자료 : 김수현,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와 시사점, 서울연구원)

- 런던 해크니 자치구와 의회, 쇼디치 개발신탁(Shoreditch Development Trust)과 해크니 협동조합회(Hackney Cooperatives Development)를 통해 통후추 한 알 계약(공공자산 100년 장기 위탁 운영 계약) 추진과 쇼디치에 모여든 IT 회사들을 지원하고 창조적인 지역 특성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참고자료 : 김수현,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사례와 시사점, 서울연구원)

■ 관련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차인에게 임대 기간을 최장 5년간 보호하고 임대료 상한선을 9%로 두고 있음

- 지역 문화진흥법 제18조 문화지구 : 특화된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지구 지정은 특히 그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에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설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제24조) 가능

지역 과제 06. 생태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내 공간 재생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창조경제, 도시재생, 문화재생, 유휴공간 활성화 등의 맥락에서 지역 내 공간에 대한 문화적 활용 사업이 확산되고 있음
- 문화적 활용의 미명 아래 대규모 개발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문화적 가치, 생태적 가치 등은 배제되고 도구화되는 것이 대부분
- 지역의 생태계를 고려한 생태 문화적 가치와 관점에서 도시, 지역의 재생과 공간 활성화 사업들에 접근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 사업 성과, 공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욕망 등을 벗어나 지속가능하고 생태 친화적인 문화 공간의 조성 및 활용의 원칙이 필요한 시대

(2) 정책 방향

- 도시재생, 유휴시설 활용 등을 비롯하여 공간에 대한 문화적 활용 과정에 있어 문화적 권리, 생태적 가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구조 수립
- 지역 내 공원 등을 비롯하여 생태 친화적인 공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활성화
- 개발주의의 연장선이 아닌 생태 문화적인 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 추진

(3) 정책 내용

- 대규모 공간에 대한 문화적 활용 사업에 있어 문화영향평가 의무화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 내에 생태 문화적인 관점 반영
- 도시재생, 유휴공간 및 시설 문화적 활용 등의 과정에 있어 생태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
- 지역 내 공원과 문화예술 콘텐츠를 연계하는 생태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추진
- 생태문화공간 거점 활동, 생태 친화적인 창작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업 활성화
- 생태 친화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연구 활성화

(4) 기타

- 홀츠마르크트(Holzmarkt)
 - 위치 : 베를린, 독일
 - 개원일 : 2012년
 - 사이트 : www.holzmarkt.com
 - 키워드 : 시민 주체, 생태계, 대안적 삶, 대안공간, 공공공간
 - 주요 내용 : 베를린을 관통하는 슈프리강을 시민이 주체가 되어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만든 사례. 90년대 낙후된 슈프리강을 일대로 '미디어 슈프리'라는 이름의 관 주도 통신 미디어 개발 계획 수립. 이 개발논리에 의해 기존에 슈프리 강둑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밀려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시민단체가 연합해 '모두를 위한 슈프리강'이란 슬로건으로 관 주도의 도시개발 반대 시작. 단순히 무차별적 개발을 저지한 것을 넘어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공공성을 요구한 사례. 또한 대안적 삶에 대한 실험을 펼치는 공간으로 가꿈. 현재 생태계를 해치지 않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대안공간으로서의 '모든 이어지는 슈프리강'이란 슬로건의 캠페인 진행.

- 공원 구성 및 프로그램 : 주민의 의견을 통해 공동작업장, 미확정 공간, 산책로, 클럽, 극장, 카페, 식당, 작은 호텔 등의 시설 운영, 주민과 끊임없는 포럼 진행.

[그림] 홀츠마크트(Holzmarkt)의 모습



■ 프라우제롤드가르텐 (Frau gerold's garten)

- 위치 : 취리히, 스위스
- 면적 : 2500㎡
- 개원일 : 2012년
- 사이트 : www.geroldgarten.ch
- 키워드 : 정원, 생태계, 요리, 문화예술, 휴식
- 주요 내용 : 녹색 도시를 꿈꾸는 취리히의 녹색정원. 프라우제롤드가르텐. 비어있던 공터에 자연과의 조화를 컨셉으로 한 공원 조성. 허브, 채소, 과일나무들 중심으로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진 구성. 가로세로 제멋대로 쌓인 15개의 컨테이너에 공연과 전시, 바(bar), 음식점이 채워져 있으며, 일정간격으로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공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특징 또한 취리히대학과 응용과학 및 녹색도시 설계 연구 협업 진행.
- 공원 구성 및 프로그램 : 가드닝, 생태워크숍(약초 및 곤충에 대한 정보 등), 문화예술 교육 워크숍, 공연, 전시, 상점 및 아틀리에, 팝업스토어 등

[그림] 프라우제롤드가르텐(Frau gerold's garten)의 모습



지역 과제 07. 콘텐츠 중심의 역사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문화유산 정책은 국가 정체성, 역사문화교육, 문화관광 등의 관점에서 소중한 사회적 자원이자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주의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등한시되어옴
- 문화유산과 관련한 정책들은 여전히 물리적 보존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보다 문화유산과 관련한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함
- 문화유산을 다루는 행정체계도 보존과 관리, 보급, 활용, 연구 등이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계도 부족한 상황

(2) 정책 방향

- 문화유산을 둘러싼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구조 설립이 필요
- 문화유산 콘텐츠 연구/개발/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 문화유산을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각 지역별로 문화유산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기구 설치

(3) 정책 내용

- 국가 단위의 통합적인 문화유산기구 설치
- 문화유산의 물질성을 넘어 지역성, 역사문화,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유산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광역자치구 별 '지역문화유산청' 설치
- 문화유산 관련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지원
- 생활단위(마을, 동네) 스토리텔링 관광정책 수립

지역 과제 08. 지역별로 자율적인 시민자치문화와 생활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지역 문화진흥법 제정(2014년 1월 28일)으로 지역 문화진흥의 기본원칙(동법 제3조)이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등으로 제시됨
- 지역 문화진흥법 제정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지역 문화 정책은 여전히 중앙 정부의 전달 체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중앙 집권적인 사업 구조와 예산 편성은 지역 문화를 공급형 공공사업에 의존적인 체계로 고착화하고 있음
- 지역 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기반한 시민 자율적이고, 주민 생활 환경을 중심에 둔 중장기적 정책 패러다임의 구조화가 시급함

(2) 정책 방향

- 지역의 정체성과 생태계에 기반한 시민자치 문화 및 생활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구조 형성
- 지역 내 삶의 기술, 생활창작 등을 둘러싼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전환도시 등의 혁신적인 시민사회 패러다임과 연계
- 생활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지원정책 다각화
- 지역 문화정책의 관계망 속에서 생활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혁신적이고 통섭적인 접근 필요

(3) 정책 내용

- 생활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 지역 문화진흥법 등에 생활예술 단체 및 공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의 형식화된(답다운 방식의 마스터플랜 문화도시 계획수립에서 벗어나 시민자치 문화 및 생활예술의 가치와 질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시민권에 기초한 시민문화도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통섭적 문화계획’, ‘예술행정 혁신을 위한 문화 거버넌스’ 등을 ‘빌드 업 플랜’(build-up plan) 방식으로 수립
- 지역 내 시민자치 문화 및 생활예술 활동과 사회적 혁신 활동 상호 간에 창의적이고 통섭적인 연계 사업 추진 : 도시농업, 가드닝, 적정기술, 제작문화, 생활창작(핸드메이드, DIY 등), 문화예술교육,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시민자치 문화 연계
- 생활권 내 생활예술 공간 지원정책 다각화 : 기존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민자치 문화와 생활예술 주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 활용 전략 및 지원사업 활성화, 이를 위해 지역 내 생활예술 공간을 통합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조율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공간들을 발굴하고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가칭) <지역생활예술공간 공유센터>를 설치, 활용
- 공공문화기반시설 연계 생활예술 커뮤니티 지원사업 활성화
- 지역성의 관점에서 시민자치, 생활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시도

(4) 기타

- 생활예술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 자료 참조
 - 성남문화재단, 「시민 생활예술 창작, &생존으로서의 행복&을 말하다」, 2014
 - 문화사회연구소, 「성북문화재단 중장기 문화정책 연구」, 성북문화재단, 2013
 -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2012

지역 과제 09.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와 빈곤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산업의 전면화로 예술창작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위축이 진행.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더 심각한 고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만들어나갈 만한 물적 기반이 빈약함
-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나 문화예술인들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과 육성/지원정책의 한계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2) 정책 방향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
- 사회적경제와 연동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기반 제공
-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방안 정착
-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초·중·등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함

(3) 정책 내용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국가/지자체 단위)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1학생-1문화예술-1체육 활동' 기회제공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교육방향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응 활동을 지원
 - 방과후학교, 마을결합형 학교,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의 효과성을 높이는 협동조합 역할 강화와 역량 제고 지원.
- ※ 방과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현행 정책 추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확장
 - 진로직업체험 &꿈길& 전산망에 대응되는 광역 단위 (가칭) 문화예술인력정보센터 구축 연계
- 문화부와 노동부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전국 단위로 추진
- 지역 단위 정책전달체계를 지역 문화 생태계 협력체계로 전환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육성교육과정을 협력체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함

지역 과제 10.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1) 취지와 배경

- 90년대, 홍대 미대 학생들이 학교 인근 공간들에 작업실을 만들고 여러 장르의 작업들을 펼쳐갔고, 더불어 홍대에 연고가 없던 청년예술가들도 함께 모여들며 이곳이 특색있는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음. 지금은 홍대 앞 또한 포화되고 상업화되었지만, 이 흐름은 인근의 합정, 상수, 망원, 연남동, 당인리로 이어지며 지속되고 있음
- 십여만명의 예술전공 대학생들이 예술가로의 첫발을 내딛고 있지만, 이들에게 지역은 학교가 위치한 곳 이외에 예술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진 않고 있고, 임대료 부담 등으로 졸업 후 대학 인근 지역에서 자리 잡고 예술활동을 이어가는 사례는 거의 없음

(2) 정책 방향

- 청년예술가들의 작업, 작품발표 공간 확보와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의 시너지를 냄
-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공공간의 마련으로 인근 대학의 예술전공 학생들이 지역에서 시도를 펼칠 수 있게 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도를 원하는 외부의 청년예술가들을 유입시킴
- 청년예술가들의 수입원에서 레슨, 학원강사 등의 사교육 영역에서의 활동 비율이 높기에 지역과 연계된 공공적인 의미가 있는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정책 내용

- 청년 문화예술 공간의 지역 자산화를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한 혁신 거버넌스 활성화
 - 청년 당사자 주체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존중
- 지역 내 청년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투자기금과 연계하는 사업 모델 활성화
- 예술계열 대학생들이 졸업 후, 학교 인근에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정착하는 과정을 지원. 입주 청년예술가들이 지역의 공공적 의제에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각 기초 지자체의 협력하에 진행
-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과 지역 내 대학 수업 및 졸업 작품 활동(전시, 공연, 포럼 등) 연계 및 지원.
- 지역의 유휴공간을 예술공간으로 재생하는 시도를 확대하고,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단지 등의 공공시설, 지자체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유휴공간에 대한 청년예술가 입주 공간으로서의 시도
-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시행하며, 이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칭 '마을 예술 강사'를 청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규모 있게 채용해서 지역에 배치
- 청년 공간을 매개로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 전통시장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사회적 경제 사업 등에 투입된 청년 주체들을 네트워킹하고 지역 주체로 커뮤니티화하는 지원사업 추진
- 문화예술을 매개로 도시+지역(농어촌) 간 청년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활성화

(4) 기타

- 서대문구청과 청년예술가네트워크가 협력, 유휴공간이었던 연세대 앞 지하도를 창작놀이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공간 확보와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을 함께 시도 중